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1월 10일

발 의 자: 심현정 의원

찬 성 자: 김광성, 남진삼, 박춘희의원

1. 제안이유

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자 집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위탁 여부 판단 근거인 서류제출을 확충하여 정비하고, 독립 조항으로 신설, 필요서류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동의안 제출 시 필요서류로 위탁계획 관련 서류임을 삭제

(안제7조관련)

나. 제7조의2호(민간위탁 동의안)를 신설하여

의회 동의안 제출서류로서 10호를 규정(안제7조의2관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불임 참조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2. 12. 29. ~ 2023. 1. 9.(11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2. 12. 29.~ 2023. 1. 4. 아래표 참조.

원안(의회)	제출 의견(행정과)	의회 의견
<p>제7조제1항 중 “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”을 “동의안”으로 한다.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7조의2(민간위탁 동의안)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탁사무명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. 위탁사무 내용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 5. 민간위탁 기간 6. 수탁자 선정방식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.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. 제19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0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	<p>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탁사무명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. 위탁사무 내용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 5. 민간위탁 기간 6. 수탁자 선정방식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<p>제7조제2항 중 “해당”을 “제19조2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한 해당”으로 한다.</p> <p>(수정사유) 제6조제2항 각 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조항신설 없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개정조례안 대로 명확화하고, 제7조제2항에 최초 동의시의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 필요 제출 서류로 종합성과평가 결과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최초 동의안 서류와 재위탁 또는 재협약 동의안 서류를 명확화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불수용】</p> <p>집행부 의견은 민간위탁 동의서류를 독립조항으로 명시하지 말고 기존 제6조 위탁 계획 서류를 고쳐 대체하자는 것으로</p> <p>상기 의견은 위탁동의시 의회 제출서류를 구분하여 독립조항으로 신설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</p>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”을 “동의안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민간위탁 동의안)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제19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(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에만 해당한다)
10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 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----- ----- ----- <u>동의</u> <u>안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조의2(민간위탁 동의안) 군수</u> <u>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</u> <u>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</u> <u>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위탁사무명</u> 2. <u>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</u> <u>필요성</u> 3. <u>위탁사무 내용</u> 4. <u>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</u> <u>지원시설, 위치도)</u> 5. <u>민간위탁기간</u> 6. <u>수탁자 선정방식</u> 7. <u>소요예산 및 산출근거</u> 8. <u>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</u> <u>적정성 검토 결과</u>

9. 제19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
종합성과평가 결과(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에만 해당한다)

10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[관련법령]

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관련 조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심현정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0